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325

발의연월일: 2021. 7. 5.

발 의 자:조경태·윤재갑·조수진

이종배 • 윤두현 • 이채익

곽상도 · 정동만 · 홍준표

강대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을 적절히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 및 보고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매 수업일에 일상점검을,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, 전염병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별점검 을 실시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정기점검 횟수가 연 1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, 점검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,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, 학교시설의 환경 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 및 제4

항).

법률 제 호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전단 중 "점검하고"를 "연 2회 이상 점검하고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시설의"를 "지체 없이 시설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	제4조(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
위생) ① (생 략)	위생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	②
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	
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·관리	
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	
하는 바에 따라 <u>점검하고</u> , 그	<u>연</u> 2회 이상 점검
결과를 기록·보존 및 보고하여	하고
야 한다. 이 경우 환경위생 점	
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	
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	
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	
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	4
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	
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	
한 경우에는 <u>시설의</u> 보완 등	<u>지체 없이 시설의</u> -
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	
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	
여야 한다.	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